

의안번호	2218132
의 퇴 인	문대림의원
회 답 일	2026.6.17.
추계번호	26D1954
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69조(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·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 등에 관한 특례)	－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운송비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유통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여야 함 ※ 현행법은 “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·요금 등의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”고 규정 －개정안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음 ① 「해운법」 제23조제1호¹⁾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·요금 ② 운송에 직접 수반되는 하역·상하차 및 항만이용 관련 요금 ③ 공동출하·공동선적·공동운송 등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비용 ④ 지원기준의 산정, 실태조사, 전자적 신청·정산 및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에 필요한 비용 ⑤ 그 밖에 농수산물의 육지 반출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69조(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·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 등에 관한 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1) 「해운법」 제23조(사업의 종류)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내항 화물운송사업 :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

2. 상세 사유

- 현행법은 “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·요금 등의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재원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개정안은 “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·요금, 하역·상하차 및 항만이용 관련 요금, 지원기준 산정, 실태조사,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비용 등”을 지원하도록 함
 - 개정안은 유통구조 개선 외 운임, 항만이용 요금 등을 지원대상으로 직접 규정하며, 현행법에 비해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,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점에서 현행법과 차이가 있음
 - 개정안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·요금, 항만이용 관련 요금,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은 각 지원 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, 각 대상별 지원 규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,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·요금 및 항만이용 관련 요금으로 발생하는 연간 총 비용에 대한 현황 자료가 부재하여, 개정안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를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 곤란함
 - 참고로,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‘제주산 주요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’, ‘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 지원사업’ 등을 현재 실시 중에 있음

[참고] 제주특별자치도 주요농산물 등에 대한 물류비 지원사업 현황(2026년)

□ 제주산 주요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

- 사업비: 3,150백만원(도 예산)
- 지원대상: 도내 농협 및 영농조합법인
- 지원범위: 가락시장 기준가격 월평균 손익분기점 이하 거래 품목
- 지원내용: 도외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제주산 주요 농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의 50% 지원
※'25년 제주산 농산물 월평균 가격이 손익분기점 이상으로 형성되어 미지원

□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 지원사업

- 총사업비: 14,425백만원(국비 6,500, 지방비 6,560, 자부담 1,365)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총사업비	연도별 사업비				
		'22년	'23년	'24년	'25년	'26년
계	14,425	600	1,881	3,700	4,144	4,100
국 비	6,500	—	950	1,850	1,850	1,850
도 비	6,560	600	760	1,480	1,880	1,840
(농가)자부담	1,365	—	171	370	414	410

- 사업대상: 지역 농·감협을 통해 제주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(법)인
- 사업내용: 내륙거점물류센터*에서 소비지까지 물류비 일부 지원
* 5개소: 경기 안성, 경남 밀양, 전남 장성, 충북 보은, 강원 횡성

자료: 제주특별자치도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상욱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상욱	02-6788-4673	flyhigh@assembly.go.kr